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766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www.krihs.re.kr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①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주요내용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보임**
* 2016년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
-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등록세를 활용**
- 가격급등 시,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을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2016년 3월, 3%p) 정책을 시행
- 3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율이 크게 3배 이상 차이**
- 4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
-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반영하여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 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의 세율 적용
- (비과세 요건) 주된 거주주택으로 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② 1가구 1주택이면서, ③ 취득 이후 계속 거주했었고, ④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시사점

- ①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
- 주택가격 급등기에 부동산등록세에 대한 세율과 과세구간을 조정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
- ②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부동산등록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 취득세율에 비해 세율이 매우 높음**
- ③ 엄격한 자본이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 우리나라도 비과세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실거주 목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
* (비과세제도 도입 목적)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
- ④ 자본이득세의 세율 결정구조와 카운슬세의 납세의무자 등에서 우리와 특징적인 차이를 보임**
- (자본이득세) 소득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카운슬세) 주택 거주자(자가는 소유자, 임차는 임차인)를 납세의무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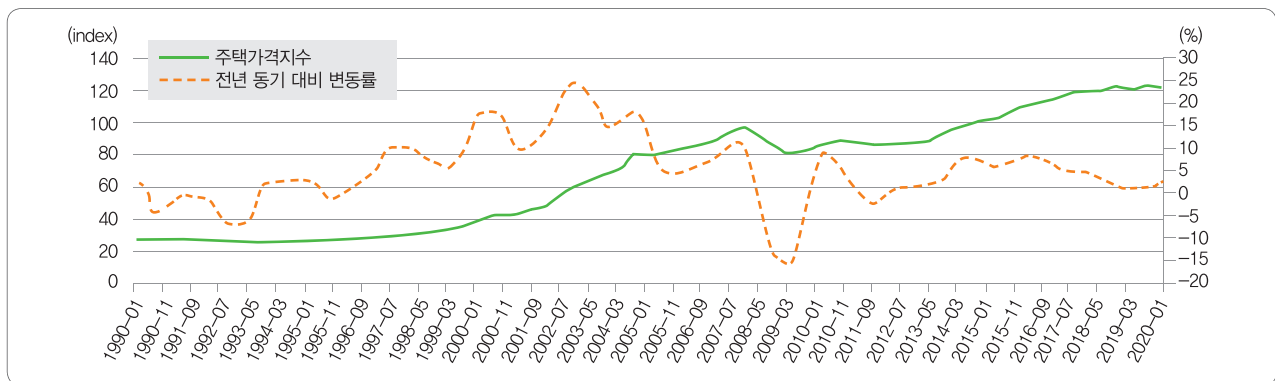
1. 영국의 주택가격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잉글랜드 England)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09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2009년 3월 -15.54%(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의 하락률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4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8% 이상 상승
 - 최근 상승률이 낮아져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3월 기준 2.09% 상승

그림 1 잉글랜드(England)의 주택가격지수 및 변동률



주: 지수는 199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자료로 2015년 1월이 기준(100.0)인 월별 자료이며, 변동률은 전기 대비 변동률을 사용.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2020년 6월 1일 검색)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재작성.

(가격급등 원인) 저금리, 경기회복세 강화,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 (2014년 상반기) 낮은 주택자금 조달비용 및 경기회복세 강화로 주택가격 상승(한국은행 2014, 9)
 - 2012년 8월 이후 시행된 'Funding for Lending Scheme'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졌으며, 2013년 8월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면서 저금리로 주택자금 마련이 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강화되었으며, 영국 정부의 'Help to buy scheme' 정책도 주택매입 수요 촉발에 일부 영향을 미침
- (2016년 상반기) 주택공급 부족과 외국인 투자 비중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 증가한 주택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했고 중국과 중동 지역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하면서 주택난이 심화됨

2. 부동산 조세제도 현황

주택의 거래단계에 따라 부동산등록세, 카운슬세, 자본이득세를 부과

(취득단계) 우리나라의 취·등록세와 유사한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를 부과하며,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이 관장하는 국세에 해당

(보유단계) 지방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유사한 카운슬세(Council Tax)를 부과

(매매·이전 단계) 국세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등을 부과

표 1 영국의 주택 거래단계별 부동산 관련 세목

구분	국세	지방세
취득단계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	-
보유단계	-	카운슬세(Council Tax)
매매·이전 단계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

출처: 저자 작성.

(부동산등록세)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증가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활용

(개념 및 도입배경) 부동산 거래 시 부과하는 세제로서 인지세 개편을 통해 2003년에 도입

- (개념) 기존 주식거래에 0.5%의 세율로 부과하던 인지세(Stamp Duty)를 토지와 연계된 부동산 거래에 확대 적용한 세금
- (도입배경) 주택 내부장식 및 고가가구에 대한 별도 거래를 통해 인지세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 12월 부동산등록세를 도입
- 연계된 부동산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분할매각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과세대상 및 세율) 토지, 주거용 건물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용도·사용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세율 적용

- (과세대상과 납세자) 토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등의 부동산이 과세대상이며 주택의 경우 12만 5천 파운드(약 1억 9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에게 부과
- (과세표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한 매입가격이나 임대료의 순현재가치(純現在價值, net present value)
- (세율) 거래가액별로 차등과세하며, 부동산등록세는 단순누진세율 구조
- (세액 산출 구조) 주거용(residential)-비주거용(non-residential), 영구사용권(freehold)-일시사용권(leasehold), 불리한 조건(disadvantaged area)에 위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이

표 2 영국의 부동산등록세 세액 산출구조

구분			지방세
주거용	영구사용권(freehold)		취득가액(실거래가) × 세율(단순누진세)
	일시사용권(leasehold)	새로운 임대차 계약	취득가액(임대 프리미엄) × 세율(단순누진세)* + 임대료 순현재가치 × 세율(초과누진세)
		기존 임대차 계약	임대 프리미엄 × 세율(단순누진세)*

주: 새로운 주거용 임대 부동산 임대료 순현재가치 대한 취득세는 12만 5천 파운드 이하일 때는 0%, 12만 5천 파운드 초과일 때는 초과 부분에만 1%.

주2: 프리미엄 부동산등록세는 영구사용권 부동산등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적용됨.

출처: 저자 작성.

(비과세 및 중과 규정)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p 중과

- (비과세) 생애 최초로 50만 파운드(약 7억 7,5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 (다주택자 중과)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취득세율에 3%p 가산된 세율을 적용
 - (배경)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대출이 2008년 이래 40%나 증가했으며,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2016년 4월 임대용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

표 3 영국의 부동산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2019년 기준)

과세구간	1주택자	다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
12만 5천 파운드 이하	0%	3%	비과세
12만 5,001~25만 파운드	2%	5%	
25만 1~92만 5천 파운드	5%	8%	5%(30만~50만 파운드)
92만 5,001~150만 파운드 이하	10%	13%	8%(50만~92만 5천 파운드)
150만 파운드 초과	12%	15%	10%
			12%

주: 다주택자는 2016년 4월부터 첫 시행.

출처: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2020년 1월 7일 검색);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land-tax-buying-an-additional-residential-property#who-the-higher-rates-apply-to> (2020년 6월 2일 검색).

주택가격급등 시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 (시장안정) 2010년 이후 주택부족과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고자 과세구간 및 세율 조정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시행
 - (2016년 3월)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율 3%p 중과
 - (2018년 10월) 고가주택 범위 조정 및 세율 상향: 12만 5천~25만 파운드(2%), 25만~95만 파운드(5%), 92만 5천~150만 파운드(10%), 150만 파운드 초과(12%)
 -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저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상향(12만 5천~17만 5천 파운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정책도 실시

표 4 시기별 영국 부동산등록세 과세구간 및 세율

2003년 12월~		2011년 4월~		2012년 3월~		2018년 10월~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6만 파운드	0%	~12만 5천 파운드	0%	~12만 5천 파운드	0%	~12만 5천 파운드	0%(3%)
6만~25만 파운드	1%	12만 5천~25만 파운드	1%	12만 5천~25만 파운드	1%	12만 5천~25만 파운드	2%(5%)
25만~50만 파운드	3%	25만~50만 파운드	3%	25만~50만 파운드	3%	25만~92만 5천 파운드	5%(8%)
50만 파운드~	4%	50만~100만 파운드	4%	50만~100만 파운드	4%	92만 5천~150만 파운드	10%(13%)
-	-	100만 파운드~	5%	100만~200만 파운드	5%	150만 파운드~	12%(15%)
-	-	-	-	200만 파운드~	7%	-	-

주: ()는 다주택자 세율로 2016년 4월부터 첫 시행.

출처: 김지혜 외 2020, 4 재인용.

(카운슬세)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고가 주택(H등급)의 세율이 저가 주택(A등급)의 3배

(개념 및 도입배경) 주택의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실시

- (개념) 해당 지역 내 주택의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세제로서 기본적으로 재산과세의 성격을 가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과세의 성격도 반영

- (도입배경) 1990년 주민부담금 또는 인두세 실패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
- 재산세와 주민세가 결합된 형태로 주택시장 상황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부유한 지역의 카운슬세 부담률이 더 낮기도 함
 - *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와 달리, 레이트(Rates) 제도를 시행 중
- (비과세 혜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 1인인 경우 25% 감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100% 감면
 - * 견습 훈련(apprentice schemes) 중인 사람, 전업 대학생, 외교관, 외국어 교육 부조자 등은 성인 수 산정에서 제외

(과세대상 및 세율) 주택의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며 과세액은 크게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함

- (과세대상과 납세자) 지역 내 주택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주택의 거주자(자가는 소유자, 임차는 임차인)가 납세의무자가 됨
- (과세표준) 국가기관인 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이 결정한 주택의 시세(공개시장가치, open market value of a property) 기준으로 8~9개 구간의 평가등급을 설정하는데, 구간의 상·하한 금액은 영국 의회에 의해 법으로 결정됨
- (세율) 과세대상 주택이 속한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H등급은 D등급의 2배, A등급의 3배를 부담

표 5 영국의 카운슬세 평가등급 및 세율

평가등급(Band)	잉글랜드의 가격대 밴드	스코틀랜드의 가격대 밴드	웨일즈의 가격대 밴드	D등급의 대한 비율
평가연도	1991년	1991년	2003년	-
A	4만 파운드 이하	2만 7천 파운드 이하	4만 4천 파운드 이하	6/9(67%)
B	4만~5만 2천 파운드	2만 7천~3만 5천 파운드	4만 4천~6만 5천 파운드	7/9(78%)
C	5만 2천~6만 8천 파운드	3만 5천~4만 5천 파운드	6만 5천~9만 1천 파운드	8/9(89%)
D	6만 8천~8만 8천 파운드	4만 5천~5만 8천 파운드	9만 1천~12만 3천 파운드	1(100%)
E	5만 2천~12만 파운드	5만 8천~8만 파운드	12만 3천~16만 2천 파운드	11/9(122%)
F	12만~16만 파운드	8만~10만 6천 파운드	16만 2천~22만 3천 파운드	13/9(144%)
G	16만~32만 파운드	10만 6천~21만 2천 파운드	22만 3천~32만 4천 파운드	15/9(167%)
H	32만 파운드 초과	21만 2천 파운드 초과	32만 4천~42만 4천 파운드	2(200%)
I	-	-	42만 4천 파운드 초과	21/9(233%)

출처: 이선화 외 2017, 28.

- H등급의 평균 과세액은 D등급의 2배에 해당하는 3,634파운드(2020-21 기준) 가량이며, 최근 평균 과세액이 3~5%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기준세액(D등급 기준)은 개별 지방정부가 결정

표 6 영국의 지역별 H등급 평균 과세액

구분	잉글랜드		지역			
			런던(London area)		수도권(Metropolitan area)	
	기준	상승률	기준	상승률	기준	상승률
2016~2017년	3,060파운드	3.1%	2,612파운드	0.6%	3,012파운드	3.8%
2017~2018년	3,182파운드	4.0%	2,700파운드	3.4%	3,150파운드	4.6%
2018~2019년	3,342파운드	5.0%	2,810파운드	4.1%	3,316파운드	5.3%
2019~2020년	3,500파운드	4.7%	2,954파운드	5.1%	3,478파운드	4.9%
2020~2021년	3,634파운드	3.8%	3,068파운드	3.9%	3,618파운드	4.0%

출처: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0, 10의 영국 지역별 D등급 평균 과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본이득세) 취득 이후 계속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며, 소득에 연동되는 것이 특징

(개념 및 도입배경) 자본자산 처분에 따른 이득에 부과하는 세제로,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고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큰 편임

- (개념) 자본자산 처분 시에만 적용되는 세제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개념적으로 유사
- (도입배경)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과 수입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유인을 줄이고자 1962년 도입됐으며, 1999년부터 일반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있음

(과세대상 및 세율)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액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

- (과세대상) 부동산·주식·지적재산권 및 사업 영업권 등의 자산 양도(매매·교환·증여) 시, 자산의 소유권 이전(자산처분 시)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 (과세표준) 처분가격과 과거 취득가격의 차이
-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반영하여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의 세율 적용
 - 개인 소득세가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소득과세액 + 양도가액이 50만 파운드 이하이면 과세표준에 18%, 초과되면 28%의 세율 적용
 - 2019~2020년 기준으로 양도차액이 연간 1만 2천 파운드(약 1,860만 원) 이하이면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는 매년 조정되고 있음

표 7 영국의 부동산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2019년 기준)

구분(과세소득)	과세소득 + 양도소득	과세표준	1주택자		
			2011년 이후	2008~2010년	1988~2007년
기본세율 납세자 (1만 2,501~50만 파운드)	50만 파운드 이하	양도차액	18%	18%	소득세율
	50만 파운드 초과	양도차액	28%		
고세율 납세자(15만~50만 1파운드) 및 추가세율 납세자(15만 파운드 이상)		양도차액	28%		

주: 영국은 개인 소득세 부과시 기본세율 납세자(20%), 고세율 납세자(40%), 추가세율 납세자(45%)로 구분.

출처: <https://www.gov.uk/capital-gains-tax/rates> (2020년 1월 7일 검색).

(비과세 요건) 취득 이후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비과세 요건이 엄격

- 주된 거주주택(main home)과 이에 부수되는 0.5헥타르(ha) 이하의 정원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주된 거주주택의 요건 외에 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② 1가구 1주택이면서, ③ 취득 이후 계속 거주했고, ④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
 - 특히,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적용
 - * 2개 이상의 주택 소유 시에도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양도 직전 36개월, 허용부재기간, 직장 관련 숙소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 요건에 대해 예외가 인정(박정수 2019, 156)
 - * 비과세 요건을 일부 충족할 경우 부분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부동산등록세를 주로 활용

- 주택가격 급등기에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
 - (2003년 12월)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 25만~50만 파운드(2→3%), 50만 파운드 초과(3→4%)
 - (2011년 4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 추가 및 세율 상향: 100만 파운드 초과(4→5%)
 - (2012년 3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 추가 및 세율 상향: 200만 파운드 초과(5→7%)
 - (2016년 3월)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율 3%p 중과
 - (2018년 10월) 고가 주택 범위 조정 및 세율 상향: 12만 5천~25만 파운드(2%), 25만 파운드~95만 파운드(5%), 92만 5천~150만 파운드(10%), 150만 파운드 초과(12%)
-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저가주택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

전반적인 부동산등록세율이 높고, 고가 및 다주택자에는 최대 15%의 세율 적용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15%의 부동산등록세 부과

- 150만 파운드 이상의 고가 주택 취득 시,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3%p가 중과된 15%의 세율이 반영됨
-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1~3%를 부과하고 있으며, 4주택 이상일 경우 4%를 부과
 - 영국과 비교하여 취득세율이 낮은 편이며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4주택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임
- * 홍콩의 경우 15%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다주택자·외국인·법인에 대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3주택 내국인과 2주택 영주권자 15%, 외국인 20%, 법인 25%)

처분 시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주된 거주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

- 주택의 취득 이후 전 기간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 혹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등 주된 거주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

비과세 요건

주된 거주주택(main home)과 이에 부수되는 0.5헥타르(ha) 이하의 정원을 양도한 경우

- 주된 거주주택의 요건 외에 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② 1가구 1주택이면서, ③ 취득 이후 계속 거주했고, ④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 우리나라는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주거이동과 거래가 발생할 우려 존재
 -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요구
-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비과세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실거주 목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

납세의무자, 세율 결정체계 등에서 차이

영국 부동산 조세체계는 자본이득세의 경우 소득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카운슬세의 경우 주택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의 특징

-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의 세율 결정 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의 세율을 적용
- (카운슬세) 납세의무자가 주택의 거주자(자가: 소유자, 임차: 임차인)이므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카운슬세를 부담하게 되며, 비혈연 관계의 성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공동으로 부담하기도 함
- 이는 부동산 세제 부과 시, 주택수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참고문헌

- 김지혜·노민지·오민준·권건우, 2020,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국토정책Brief 758호, 세종: 국토연구원.
- 박정수,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이선화·박상수·이동식·안창남·김은경·김필현·김태호·김경환, 2017, 주요국의 재산세제도,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2014, 영국의 경제 상황 및 주요 이슈, 런던: 한국은행.
-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0, Council tax levels set by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2020–21, *Statistical Releas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4274/Council_tax_levels_set_by_local_authorities_in_England_2020-21_Rev.pdf (2020년 6월 2일 검색).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2020년 6월 1일 검색).
- UK government,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2020년 1월 7일 검색).
- _____. Capital Gains Tax, <https://www.gov.uk/capital-gains-tax/rates> (2020년 1월 7일 검색).
- _____. Council Tax,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ouncil-tax-statistics> (2020년 6월 2일 검색).
- _____. Higher rates of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land-tax-buying-an-additional-residential-property#who-the-higher-rates-apply-to> (2020년 6월 2일 검색).

김지혜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kjh@krihs.re.kr, 044-960-0331)
노민지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mjnoh@krihs.re.kr, 044-960-0263)
오민준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mjoh@krihs.re.kr, 044-960-0388)
권건우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gwkwon@krihs.re.kr, 044-960-0669)

